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과도한 형벌규정 하향 조정 〉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04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제2215204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과도한 형벌규정 하향 조정(안 제29조제1항)	2
※ 참고자료	8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221520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복기왕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5. 12. 12.
3. 회 부 일 : 2025. 12.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등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하려는 것임(제29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과도한 형벌규정 하향 조정(안 제29조제1항)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벌규정의 벌금형을 3천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u>5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 2.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1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4. 제19조의24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 ~ 4. (생략) ② (생략)	제29조(벌칙) ① ----- ----- --- <u>3천만원</u>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안에 따라 벌금액이 하향 조정되는 대상은 제19조제1항 및 제3항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제19조의4제1항2)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의무, 제19조의23제2항3)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불합격 기계식주차장 운영 금지 의무 또는 제19조의24제1항4)에 따른 행정기관의

1)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주차장법」

제19조의23(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으며,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4) 「주차장법」

제19조의24(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불합격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임.

이들 각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액의 조정에 대해서는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함께 벌칙 외 다른 예방 및 제재 수단을 고려한 입법목적 달성 효과, 다른 법률의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 국회의 법정형 표준화 기준 등에 관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반려,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 대집행 및 이행강제금 부과⁵⁾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음.

-
- 4. 노후화, 사고발생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5.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 6. 그 밖에 현장조사 또는 안전검사 시 이용자 등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제3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둘째, 현행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조치의무와 유사한 입법례로서 일반 시설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어린이활동공간, 어린이제품 등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관련 법률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참고1. 참조)

【 안전조치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관련 입법례 】

근거 법률	안전조치 대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행위	현행 벌칙 규정	비고
「주차장법」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 명령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안: 벌금형 3천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취급시설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반 시설물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명령 위반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 이행 및 시정 명령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 이행 및 시정 명령 위반		
「환경보건법」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개선·준수 명령 위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에 대한 수거등 명령 위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안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거 법률	안전조치 대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행위	현행 벌칙 규정	비고
		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에 제공		
「궤도운송법」	궤도시설	-안전검사 결과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긴급안전점검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궤도시설에 대한 시설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위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셋째, 국회의 법률안 표준화 기준에 따르면, 벌칙 규정의 벌금액은 징역형 기간에 상응하도록 규정하되 범죄의 종류 및 죄질에 따라 가감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이에 따르면, 징역형이 3년 이하인 경우 벌금액은 3천만원 이하임.

한편,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6)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2022.1.20. 국회사무처지침 제390호)

제45조(법정형) ① 법정형은 범죄의 죄질,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41조에 따른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규정할 수 있다.

2. 벌금형을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과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규정하되 범죄의 종류 및 죄질에 따라 가감한다.

징역	벌금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2년 이하	2천만원 이하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형이 중한 종전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규정⁷⁾과 다른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의도를 고려할 때 형이 무거운 종전 규정을 적용할 형사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정안과 같이 입법화되는 경우 개정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개정법률 이전 위반행위에 대해서 「형법」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민간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형량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22.1.20. 국회사무처지침 제390호)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 이하 당 벌금 1천만원 이하” 기준 및 「시설물안전법」 등 유사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벌금 감경에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584

7)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참고1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입법례

화학물질관리법	
안전조치 준수 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동안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조치 준수 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제23조(긴급안전조치)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거나 시설물이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되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외한다)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2.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이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3. 제22조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결함 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조치 준수 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제41조(화재예방안전진단)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3. 제41조제5항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환경보건법	
안전조치 준수 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3. 제23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개선명령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안전조치 준수 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제10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	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1. 제10조의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표할 수 있다. 1.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안전조치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제13조(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및 개선) ①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린이 등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제29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u>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안전조치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제15조(안전검사) ③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3. 제15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자
궤도운송법	
안전조치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제23조(시설개선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궤도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500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8.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궤도시설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	--